

스미토모 상사 그룹
컴플라이언스 정책

스미토모상사그룹의 경영이념 · 행동지침

지향해야 할 기업상

우리들은 항상 변화를 선취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널리 사회에 공헌하는 글로벌기업 그룹을 지향한다.

경영이념

[기업사명] 건전한 사업활동을 통해 풍요로움과 꿈을 실현한다.

[경영자세] 인간존중을 기본으로 신용을 중시하고 명확함을 지향한다.

[기업문화] 활력이 넘치고 혁신을 창조해내는 기업풍토를 양성한다.

행동방침

- 스미토모의 사업정신 및 경영이념에 따라 성실히 행동한다.
- 법과 규칙을 지키고 고결한 윤리를 유지한다.
- 투명성을 중시하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한다.
- 지구환경 보전을 위해 힘쓴다.
- 바른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에 공헌한다.
-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팀워크와 종합력을 발휘한다.
- 명확한 목표를 정하여 정열을 가지고 실행에 옮긴다.

목 차

제 I 부 CEO 메시지

page 4

제 II 부 스미토모 상사 그룹 컴플라이언스 정책에 대해서

page 6

- 본 그룹 컴플라이언스 정책의 적용 대상자는?
- 본 그룹 컴플라이언스 정책의 위치는?
- 당사 그룹 각 사의 사원에게 요구되는 것은?
- 당사 그룹 각 사의 경영진에게 요구되는 것은?
- 컴플라이언스 문제를 보고하려면?

제 III 부 그룹 컴플라이언스 지침

page 9

- ①공정한 경쟁 행위
- ②안전보장무역관리를 포함한 무역관련법령 등의 준수
- ③각종 업법의 준수
- ④장부 및 기록/세무
- ⑤뇌물증여 방지
- ⑥지적 재산권
- ⑦정보 관리
- ⑧환경보호
- ⑨내부자거래 방지
- ⑩인권 존중 및 차별·괴롭힘 방지
- ⑪이익상반 행위의 방지

제 IV 부 SC Global Speak-Up 제도

page 15

- SC Global Speak-Up 제도란?
- SC Global Speak-Up 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 SC Global Speak-Up 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사태는?
- 기존의 내부신고 제도와의 관계는?

스미토모상사그룹 임직원 여러분

2024년 4월부터 ‘중기경영계획 2026’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SHIFT 2023’을 통해 구조개혁을 단행함으로써 내적인 강인함을 갖추고 동시에 수익력을 한 단계 끌어 올렸습니다. ‘중기경영계획 2026’을 통해서는 복잡하고 빠른 변화로 인해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사업환경 속에서도 한층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며 비약적이고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성역없는 개혁을 추진하며, 강력한 사업들을 모은 ‘No.1 사업군’을 목표로 나아갑니다. 각각의 비즈니스 라인에서 목표로 삼을 ‘No.1’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전략을 구체화함과 동시에 각 사람의 마음가짐에도 변혁을 꾀하여 ‘No.1 사업군’의 실현을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에게는 결코 바뀌어서는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컴플라이언스 최우선’입니다.

‘건전한 사업활동을 통해 풍요로움과 꿈을 실현한다’
‘인간존중을 기반으로 신용을 중시하며 확실성을 최고로 여긴다’
‘법과 규칙을 준수하고 고결한 윤리를 지킨다’

이는 우리의 보편적 가치관인 스미토모 사업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과거에 컴플라이언스 문제로 어려운 경영 상황을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정한 스미토모상사그룹의 경영이념 및 행동지침의 한 구절로, 우리의 일상적인 사업활동의 근간이자 당사 그룹 컴플라이언스의 원점입니다. 또한 컴플라이언스 하나를 위반한 것이 때로는 기업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거나 관계자 및 그 가족의 인생을 바꿔 놓기도 하기에,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함으로써 여러분과 당사 그룹의 동료들을 지켜내고 싶습니다.

이처럼 ‘컴플라이언스 최우선’은 당사 그룹의 경영이념 그 자체이자 당사 그룹에 속한 우리 각 사람의 행동 기준입니다. 고민되거나 곤경에 처했을 때에는 원점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또한 이미 일어난 사태에 대해 우선 목소리를 높이고 유관 부서의 총력을 모아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도록 매니지먼트에 대한 ‘즉시 보고’를 비롯하여 대처를 더욱 강화해 갑시다.

저는 임직원 모두가 자유롭고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며 안심하고 긍지를 가지고 가치창조를 향해 나아가는 스미토모 상사그룹이 되기를 바라며 결의를 새롭게 하는 바입니다. 컴플라이언스 최우선에 대한 여러분 각 사람의 진정한 이해와 협력 속에서 ‘Enriching lives and the world’를 실현하며 끊임없이 진화하는 스미토모상사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갑시다.

제 II 부 : 스미토모 상사 그룹 컴플라이언스 정책에 대해서

스미토모상사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집행임원 CEO
우에노 신고

스미토모 상사 그룹 컴플라이언스 정책에 대해서

◆ 본 그룹 컴플라이언스 정책의 적용 대상자는?

본 그룹 컴플라이언스 정책은, 당사 그룹 전체가 공유해야 하는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사고방식을 적시한 것으로서 세계적으로 활약하는 당사 그룹의 임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에 있더라도 그때마다 요구되는 법령과 룰, 사회규범을 준수하기 위한 행동의 지침서가 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본 그룹 컴플라이언스 정책은 스미토모 상사 그룹에 속한 모든 기업의 임직원(계약 사원, 촉탁 사원, 임시 사원, 타사에 파견된 사원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에게 적용되며 우리 각자가 본 정책의 내용을 이해하여 매일의 업무에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스미토모 상사 그룹(또는 당사 그룹)’이라 함은 스미토모 상사 및 그 연결 자회사를 말합니다.

◆ 본 그룹 컴플라이언스 정책의 위치는?

본 그룹 컴플라이언스 정책과 그룹 각 사의 정책 및 룰과의 관계:

본 그룹 컴플라이언스 정책은 컴플라이언스의 관점에서 당사 그룹 각 사의 임직원이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항목에 대해 설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 그룹의 모든 정책과 룰 및 기타 규범을 망라한 것은 아닙니다. 당사 그룹 각 사의 컴플라이언스에 관한 정책 및 룰은, 본 그룹 컴플라이언스 정책을 바탕으로 해당 국가의 법령이나 업종 등에 따라 보다 세부적인 사항이 정해집니다.

이러한 당사 그룹 각 사의 컴플라이언스에 관한 정책과 룰은, 본 그룹 컴플라이언스 정책과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또한 본 그룹 컴플라이언스 정책에 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개별 정책 등이 이미 제정된 당사 그룹 각 사에서는 계속해서 각 사의 정책 등을 준수해 주십시오.

본 그룹 컴플라이언스 정책과 적용되는 각국 법령과의 관계:

당사 그룹은 글로벌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으며 당사 그룹의 임직원은 많은 다른 국가 및 지역의 법령 및 기타 규제를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지의 법령과 규제가 본 그룹 컴플라이언스 정책에서 요구되는 것보다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현지의 법령과 규제를 준수합니다. 한편, 현지의 법령과 규제가 본 그룹 컴플라이언스 정책에서 요구되는 것보다 낮은 기준인 경우에는 본 그룹 컴플라이언스 정책의 기준에 따릅니다.

◆ 당사 그룹 각 사의 사원에게 요구되는 것은?

스미토모 상사 그룹에 속한 모든 기업의 사원은 이하의 각 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 II 부 : 스미토모 상사 그룹 컴플라이언스 정책에 대해서

- 본 그룹 컴플라이언스 정책(귀하의 회사에 정책과 룰이 이미 제정된 경우는 해당 정책 등)의 내용에 대해 이해하고 일상의 업무에 임할 것. 컴플라이언스에 관해 업무상 고민되는 것이 있다면 먼저 본 그룹 컴플라이언스 정책을 원점으로 삼을 것.
- 귀하의 회사에 적용되는 모든 법, 규칙 및 명령에 따라 높은 윤리관을 유지할 것.
- 컴플라이언스와 관련된 작은 문제라도 소홀하게 취급하지 않으며 즉시 보고할 것(‘즉시 보고’에 대해서는 이하를 참조). 또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회사가 실시하는 조사 등에 성실하게 협력할 것.

◆ 당사 그룹 각 사의 경영진에게 요구되는 것은?

상기 내용과 함께, 당사 그룹 각 사의 경영진에게는 이하의 각 사항을 준수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 컴플라이언스가 최우선이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알릴 것.
- 비즈니스상의 이익과 컴플라이언스가 대립되는 경우에는 현장에 맡겨 두지 않고 경영진 본인이 분명하게 컴플라이언스가 최우선이라는 방침을 나타낼 것.
- 부하가 본 그룹 컴플라이언스 정책(사내에 정책과 룰이 이미 제정된 경우에는 해당 정책 등)의 내용을 이해하고 컴플라이언스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할 것. 이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것.
- 즉시 보고된 컴플라이언스 문제에 적절히 대처할 것. 보고된 문제가 작은 것이더라도 대응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
-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한 건전한 직장 환경을 조성 및 유지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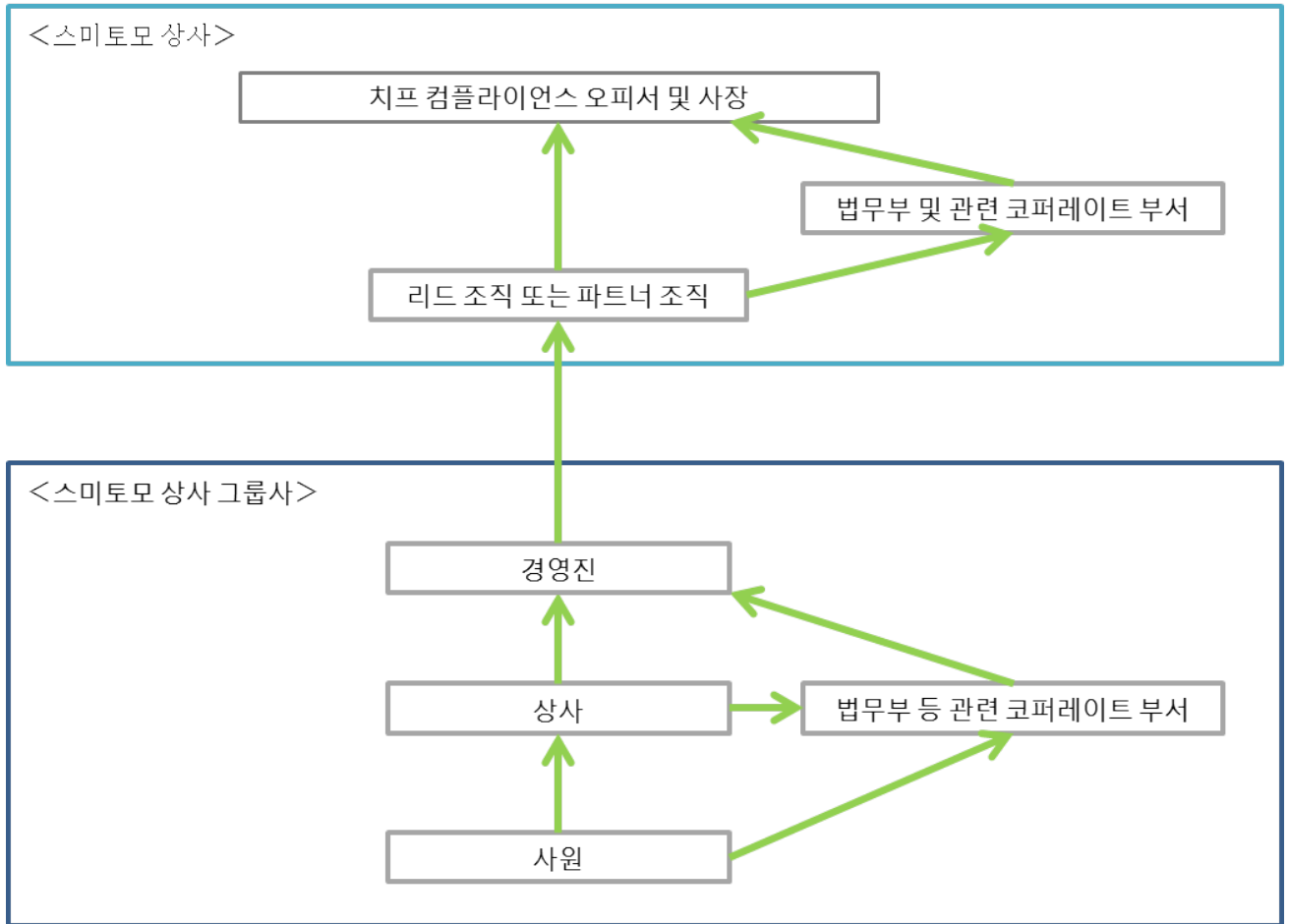
◆ 컴플라이언스 문제를 보고하려면?

스미토모 상사 그룹의 임직원은 ‘즉시 보고’를 실천해야만 합니다. 만일, 컴플라이언스 문제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어떤 사태를 인지하게 된 경우에는 아래의 도표와 같이 직무 루트에 따라 즉시 그 사태를 상사 또는 관련 코퍼레이트 부서에 보고 해 주십시오.

보고하기 위해 사태가 자세히 판명되기를 기다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문제를 바로 보고하여 대처함으로써 문제가 되는 사태가 보다 확대되고 심각해지기 전에 적절히 해결할 수 있게 되며, 나아가서는 당사 그룹 각사와 그 임직원을 보호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즉시 보고를 받은 상사는 즉시 자신의 상사 및 경영진 또는 관련 코퍼레이트 부서에 보고하고 상담을 받아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기 위한 지시 및 조언을 받습니다.

<스미토모 상사 그룹사로부터의 즉시 보고의 흐름>



※ ‘리드 조직’이란 해당 그룹사의 기업가치향상을 위한 활동을 리드하는 입장에 있는 스미토모 상사 또는 스미토모 상사의 지역거점조직을 말합니다. ‘파트너 조직’이란 리드 조직을 서포트하는 입장에 있는 스미토모 상사 또는 스미토모 상사의 지역거점조직을 말합니다.

※‘관련 코퍼레이트 부서’란 예를 들어 해당 컴플라이언스 문제가 인사 관련이면 인사 담당 부서를 말합니다.

또한 만약 어떠한 이유로 컴플라이언스 문제 또는 그 우려를 직무 루트를 통해 보고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귀하의 회사의 내부신고제도를 이용하거나 또는 SC Global Speak-Up 제도를 이용하여 사태를 보고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SC Global Speak-Up 제도의 개요에 대해서는 본 그룹 컴플라이언스 정책의 마지막 부분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참조해 주십시오.

[이하 여백]

그룹 컴플라이언스 지침

1. 본 그룹 컴플라이언스 지침은 컴플라이언스의 관점에서 당사 그룹 각 사의 임직원이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11 개 지침(‘그룹 컴플라이언스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2. 여기에서는 11 개의 그룹 컴플라이언스 지침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지침에 대한 해설을 기재하였습니다.
3. 11 개의 그룹 컴플라이언스 지침 및 각각의 해설을 잘 읽고 내용을 이해해 주십시오.

1. 공정한 경쟁 행위

[지침]

우리는 비즈니스를 영위함에 있어 공정하게 경쟁함과 동시에 국내외의 독점 금지법을 준수합니다.

[해설]

(사적인 독점 및 과점, 카르텔 및 담합 금지)

우리는 사적인 독점 및 과점, 카르텔이나 담합 등,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배제하거나 지배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경쟁사와의 사이에서 가격 및 수량의 조정이나 고객 및 판매 지역의 분배에 관한 협의를 해서는 안 되며, 그러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될 만한 여지가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해서는 안 되며, 또한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은 확실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그러한 협의는 공적기관에 의한 입찰, 민간기업에 의한 입찰은 물론이고 일상적인 거래와 관련해서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각국의 적용 법령의 준수)

또한 외국의 경쟁사와 그러한 협의를 하려고 한 경우에는 국제 카르텔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내와 EU 지역내의 경제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미국과 EU 지역 외에서 발생한 비즈니스라 할지라도 미국의 반독점법, EU 경쟁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안전보장무역관리를 포함한 무역관련법령 등의 준수

[지침]

우리는 안전보장무역관리를 포함한 무역관련법령 및 통관절차를 준수함은 물론, 각종 조약 및 각국의 여러 법령을 준수합니다.

[해설]

우리는 화물 또는 기술의 무역 거래에 있어서 사내 규정에 따라 안전보장무역관리를 포함한 무역 관련법령 및 통관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물론, 각종 조약 및 각국의 여러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 III 부 : 그룹 컴플라이언스 지침

우리는 거래되는 화물 또는 기술을 항상 파악하고, 거래에 앞서 판매처, 도착지, 최종 수요자 및 최종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관할 관청에서 필요한 인허가를 빠짐없이 취득해야 합니다. 우리는 국제적인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또는 위협할 우려가 있는 거래에는 일절 관련되어서는 안 됩니다.

3. 각종 업법의 준수

[지침]

우리는 자신이 담당하는 비즈니스에 적용되는 개별 법령(업법)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며 준수합니다.

[해설]

자신이 담당하는 비즈니스의 내용을 파악하는 일환으로서, 우리는 관련된 업법의 모든 것을 이해하며 나아가 그 개정과 새로 제정되는 법령에 대해서도 꼼꼼히 업데이트하여 업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환경 관련, 화학품과 위험품목의 취급 관련, 운수 관련 등, 분야마다 준수해야 할 많은 업법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필요에 따라 관계 부서에 상담해 주십시오. 또한 업법을 교묘히 어기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4. 장부 및 기록/세무

[지침]

우리는 회사의 회계 장부에 관한 정보에 대해 정확하고 공정하며 시의 적절하게 기록하고 관련 서류 등을 적절히 보관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룹 세무 방침에 따라 각국의 세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적절한 신고 및 납세를 실시합니다.

[해설]

우리는 회사의 회계장부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회사에 관한 재무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고 회사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성실하고도 정확하며 공정하고 시의 적절하게 기록합니다. 또한 회사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정보는 법령에 따라 적절한 방법 및 시기에 공개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정보에 대해 허위나 오해를 일으킬 만한 기재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회사의 정보를 법령에 정해진 기간 및 방법에 근거하여 적절히 관리합니다.

스미토모 상사 그룹의 세무 방침에 대해서는 이하를 참조해 주십시오:

[\[Sumitomo Corporation Group Tax Principles\]](#) (그룹 세무 방침)

5. 뇌물증여 방지

[지침]

우리는 뇌물증여나 부정한 이익 공여 등, 모든 형태의 부패 방지에 엄중하게 임합니다. 모든 국가

또는 지역의 공무원 등에 대해 뇌물증여에 해당되는 행위나 그러한 혐의가 있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은 물론, 비즈니스 이익을 목적으로 부정하게 금전, 증답, 접대 등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그러한 약속이나 제안을 하지 않습니다. 만일 공무원 등으로부터 이러한 행위를 요구 받더라도 우리는 이를 거절하고 상황에 따라 관계 당국에 알립니다. 우리는 사업 활동을 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국내외의 뇌물증여금지에 관한 법령을 준수합니다.

[해설]

스미토모 상사 그룹의 뇌물증여 방지에 관한 원칙, 스미토모 상사의 사내 체제 및 대처, 국내 및 해외 법인 및 그 외의 연결 자회사의 대처에 대해서는 이하를 참조해 주십시오:

[\[Sumitomo Corporation Group Anti-Corruption Policy\]](#) (스미토모 상사 그룹 뇌물증여방지 지침)

6. 지적 재산권

[지침]

우리는 스미토모 상사 그룹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해설]

(스미토모 상사 그룹의 지적 재산권 보호)

스미토모 상사 그룹이 보유한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및 그 외의 지적 재산권은 스미토모 상사 그룹의 귀중한 재산입니다. 스미토모 상사 그룹의 지적 재산권이 침해되는, 또는 그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상사 또는 관계 부서와 상담해 주십시오.

(타인의 지적 재산권 침해 금지)

우리는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기술에 의해 제조되는 상품의 제조 및 판매를 하는 경우나 새로운 상표를 붙여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선전 및 제공하는 경우에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는 않는지, 필요에 따라서 조사를 실시하고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한 후 진행시켜 주십시오.

7. 정보 관리

[지침]

우리는 스미토모 상사 그룹 또는 그 거래처의 기밀정보누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히 관리합니다.

[해설]

(스미토모 상사 그룹의 정보 관리) 우리는 스미토모 상사 그룹의 자산인 영업 비밀, 노하우 및 개인정보 등을 포함한 기밀정보에 대해 누설, 훼손 또는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도록 적절히 관리합니다.

(거래처 정보의 관리 및 부정한 정보 입수 금지) 또한 고객, 구입처 및 그 외의 거래처에서 제공받은 기밀정보에 대해서도 법령, 거래처와의 약속 및 사내 룰에 따라 적절히 취급합니다. 또한 경쟁사 및 기타 사업자의 기밀 정보를 부정한 수단을 통해 입수하지 않습니다.

(사건·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

만일 누설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고도 적절히 대처합니다.

8. 환경보호

[지침]

우리는 환경 방침에 따라 지구 환경 보호를 충분히 배려하며 건전한 사업 활동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해설]

우리는 스미토모 상사 그룹의 환경 방침, 적용되는 환경관련법규 및 동意的한 협정서 등을 준수합니다. 스미토모 상사 그룹의 환경 방침에 대해서는 이하를 참조해 주십시오:

[\[Environmental Management | Environment | Sustainability | Sumitomo Corporation \(disclosure.site\)\]](#)(환경 방침)

9. 내부자거래 방지

[지침]

우리는 내부자거래 규제에 반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의심을 받을 만한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해설]

우리는 어떠한 회사(스미토모 상사 그룹에 소속된 회사인지 여부를 불문하고)의 중요한 비공개 정보(내부자정보)를 이용하여 상장주식 등을 매매하거나 매매하도록 지시하지 않습니다. 내부자정보라 함은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투자가가 투자 판단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 또는 주가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정보를 말하며, 예를 들어 대규모 M&A 나 수익전망의 대폭적인 수정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또한 내부자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사내 규칙에 따라 적절히 관리하고 그 비밀을 엄수해야 합니다.

또한 내부자거래 규제는 국가에 따라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되는 법령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10. 인권 존중 및 차별·괴롭힘 방지

[지침]

우리는 인권을 존중하며 어떤 차별이나 괴롭힘도 용인하지 않습니다.

[해설]

(인권 존중)

스미토모 상사 그룹은 그 경영이념에 있어서 ‘인간존중을 기본으로 하며 신용을 중요시하고 확신을 중시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미토모 상사 그룹이 스미토모 상사 그룹과 관련된 모든 개인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차별 및 괴롭힘의 방지)

우리는 인종, 민족, 국적, 출신 지역, 피부색, 연령, 성별, 성적 지향, 성정체성, 장애 유무, 종교, 정치적 견해, 노조 가입 여부, 배우자 유무, 그 외 업무 수행과 전혀 관계없는 사유에 근거한 차별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차별적인 언동, 괴롭힘, 비방 및 중상, 협박 및 난폭 행위, 그 외 임직원으로서 부적절한 언동으로 타인에게 공포심을 주거나 또는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Respect for Human Rights | Social | Sustainability | Sumitomo Corporation \(disclosure.site\)\]](#)

(스미토모상사그룹의 인권방침)

11. 이익상반 행위의 방지

[지침]

우리는 항상 스미토모 상사 그룹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며 스미토모 상사 그룹의 이익을 희생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해설]

(이익상반)

우리는 스미토모 상사 그룹의 업무에 충실하며 항상 스미토모 상사 그룹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미토모 상사 그룹의 권한이나 역할 등을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결코 하지 않습니다.

(업무 외 활동)

우리는 스미토모 상사 그룹의 임직원으로서의 책무를 실행하는 데에 지장이 될 만한 업무 외 활동을 삼가합니다. 만약, 이익상반에 해당하는 상업 활동에 관여하거나 관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상사에게 보고하고 상담합니다.

(회사의 자산 및 정보 시스템의 사용)

제 III 부 : 그룹 컴플라이언스 지침

우리는 회사의 자산이나 정보 기기 및 시스템을 업무수행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며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하 여백]

SC Global Speak-Up 제도

◆ SC Global Speak-Up 제도란 ?

SC Global Speak-Up 란, 스미토모 상사 그룹의 글로벌 내부신고제도의 명칭입니다. 만약 컴플라이언스 문제에 직면하였으나 어떠한 이유로 직무 루트를 통한 보고와 상담이 곤란한 경우에는 귀하의 회사의 내부신고제도를 사용하거나 또는 SC Global Speak-Up 을 사용하여 본건 사태를 스미토모 상사의 치프 컴플라이언스 오피서(Chief Compliance Officer)에게 보고할 수 있습니다. SC Global Speak-Up 을 통해 신고가 이루어지면 문제가 되는 사태에 대해 즉시 조사가 개시됩니다. 또한 SC Global Speak-Up 을 통한 신고의 대응에 있어서 이하의 내용이 철저히 지켜집니다.

· 비밀 엄수

SC Global Speak-Up 을 이용하여 컴플라이언스 문제를 신고한 경우, 신고자의 정보 및 신고 내용(및 조사를 통해 입수한 정보를 포함)의 비밀은 엄수됩니다.

· 보복 행위의 금지

SC Global Speak-Up 을 이용하여 신고했다는 이유로 인한 보복 행위 및 그 외의 불이익 처분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그 외에 SC Global Speak-Up 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SC Global Speak-Up 제도에 관한 가이드 라인’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참조해 주십시오.

◆ SC Global Speak-Up 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스미토모 상사 그룹 각 사의 모든 임직원(계약 사원, 촉탁 사원, 임시 사원, 타사에 파견된 사원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이 SC Global Speak-Up 을 이용하여 컴플라이언스 문제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SC Global Speak-Up 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사태는?

컴플라이언스 문제 중 당사 그룹에 큰 영향을 줄 만한 중대한 사태에 대해서 신고할 것을 추천합니다. 신고할 수 있는 사태 유형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SC Global Speak-Up 제도에 관한 가이드 라인’을 확인해 주십시오.

◆ 기존의 내부신고 제도와의 관계는?

제 IV 부 : SC Global Speak-Up 제도

SC Global Speak-Up 은 스미토모 상사가 당사 그룹 각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도입한 것입니다. 만약 당사 그룹 각사의 내부신고제도가 이미 정비된 경우, SC Global Speak-Up 은 추가로 도입되는 것이며, 기존의 제도를 대신하거나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 그룹의 임직원은 기존의 내부신고제도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SC Global Speak-Up 을 이용하여 신고 할 수도 있습니다. SC Global Speak-Up 는 신고 및 상담 가능한 루트를 확충하는 것으로서 조금이라도 빨리 문제를 파악하여 부정행위의 확대 방지 및 조기 시정을 도모합니다.

이 상

www.sumitomocorp.com

발행 : 스미토모 상사 주식회사 법무부